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19579

제안연월일 : 2019. 4.

제 안 자 : 환경노동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 경과

의안명	대표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제출일)	경 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792호)	정부	2016.12.29.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17. 2.13.)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4160호)	김삼화	2018. 7. 2.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18.11.2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6446호)	이명수	2018.11. 8.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2019. 3.1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고용노동소위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8683호)	한정애	2019. 2.18.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19. 3.18.자로 직접 회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19133호)	임이자	2019. 3.12.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에 2019. 3.18.자로 직접 회부

나. 제367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5차 고용노동소위원회(2019. 3. 22)에서 위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들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367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2019. 3. 22)는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접어든 이래 2017년에는 고령사회가 되었으며, 불과 9년 뒤인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초고령사회)에

달하면서 고령자(55세 이상인 자) 2천만명 시대가 다가올 전망임.

이에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노력을 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의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3).

법률 제 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의 구직활동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고령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인건비, 장려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 ① 사업주는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에게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이하 “재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정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예정인 준고령자 및 고령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

	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 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법인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기관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